

행정자치부 시정요구

제 목 공공하수도시설 건설관리 및 운영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김해시, 창원시

내 용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5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과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적용의 타당성, 업무수행 및 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하며

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평가¹⁷⁹⁾의 대상은 「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」(국토교통부, 2014. 5. 23) 제2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 시기는 기본설계의 경우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, 실시설계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, 건설공사시공평가¹⁸⁰⁾는 「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」(국토교통부, 2014. 12. 30) 제3조에 따라 총공사비(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)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평가 시기는 공사의 공기가 90퍼센트 이상 진척 된 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.

1. 김해시 공공하수도시설 건설관리 부적정

① ○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(건설기술용역평가 미실시)

179) 건설기술용역평가 :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국내 건설기술용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

180) 건설공사시공평가 :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,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

김해시 ○○○○사업소 ○○과는 “○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및 차집관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”을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과 164백만원으로 계약하여 2013. 4. 10.부터 2013. 10. 14.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

“○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”¹⁸¹⁾가 착공한 2014. 12. 22.부터 6개월 이내인 2015. 6. 21.까지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,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.

② ○○○○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(건설기술용역평가 미실시)

김해시 ○○○○사업소 ○○과는 “○○○○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”을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외 2개사와 896백만원으로 계약하여 2012. 4. 16.부터 2013. 4. 15.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

“○○○○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”¹⁸²⁾가 착공한 2013. 12. 20.부터 6개월 이내인 2014. 6. 19.까지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수행하여야 함에도,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.

③ ○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(건설공사시공평가 미실시)

김해시 ○○○○사업소 ○○과는 “○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”를 ○○○○○(주)와 10,014백만원으로 계약하여 2012. 9. 27.부터 2015. 5. 18.까지 공사를 하였으므로

“○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”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말인 2016. 2. 29.까지 건설공사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,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공사시공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

2. 창원시 공공하수도 건설관리 부적정

181) ○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: ○○○○(주), 공사기간 2014. 12. 22.~2016. 6. 21., 금액 11,635백만원
182) ○○○○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: ○○○○○○, 공사기간 2013. 12. 20.~2016. 4. 19., 금액 21,876백만원

① ○면하수관거(2단계) 설치공사(건설기술용역평가 미실시)

창원시 ○○○○사업소 ○○시설과는 “○면하수관거(2단계)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”을 (주)○○○○○○○ 외 1개사와 471백만원으로 계약하여 2012. 11. 27.부터 2013. 6. 21.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므로

“○면하수관거(2단계) 설치공사”¹⁸³⁾가 착공한 2016. 1. 12.부터 6개월 이내인 2016. 7. 11.까지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,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.

② 창원시 ○○○○정비사업 2단계 공사(건설공사시공평가 미실시)

창원시 ○○○○사업소 ○○○○과는 “창원시 ○○○○정비사업 2단계 공사”를 (주)○○○○과 16,292백만원으로 계약하여 2010. 11. 12.부터 2014. 9. 30.까지 공사를 하였으므로

“창원시 ○○○○정비사업 2단계 공사”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말인 2015. 2. 28.까지 건설공사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,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공사시공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.

3. 창원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미실시

「하수도법」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,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

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상시설¹⁸⁴⁾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하수처리시설, 하수관로, 하수저류시설,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.

183) ○면하수관거(2단계) 설치공사 : (주)○○○○, 공사기간 2016. 1. 12.~2018. 2. 18., 공사금액 7,720백만원

184) 「하수도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(환경부령 제455호, 2012. 5. 12)에 따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이 포함되었으며, 개정내용은 2013. 5. 15. 시행

같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「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」 제4조 별표1. “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”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시설에 대하여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 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,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술진단을 유예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, 기술진단을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 대상시설 입증을 위한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 및 유량 등의 자료를 관할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인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.

정부합동감사 시(2016. 11. 14~2016. 11. 30) 창원시 하수시설과에서 관리 중인 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 시설을 조사한 결과 창원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(변경, 2011)에 따라 분류식 오수관로 1,146.3km, 합류식 관로 77.8km 등 총 1,224.1km가 기술진단 대상에 포함되었다.

창원시 ○○○○과는 관리대상 하수관로 1,224.1km에 대하여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공공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

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재정 부족 등을 사유로 ○○하수처리구역 10km를 제외한 ○○하수처리구역 등 12개 처리구역의 하수관로 약 1,214km에 대하여 기술진단 및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.

<창원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시현황>

구분	처리구역 면적(km ²)	기술진단 대상관로 ¹⁸⁵⁾		기술진단 실시관로(km)	감사시 지적사항
		분류식 오수관로(km)	합류식관로 (km)		
합계	161.264	1,146.3	77.8	10.0	하수도법 제20조 위반 (12개 처리구역 1,214.1km)
○○권 계	58.835	620.1	19.2	-	
○○처리구역	13.906	274.6	-	미실시	
○○처리구역	19.869	217.2	-	미실시	
○○처리구역	5.993	8.9	-	미실시	
○면처리구역	10.006	57.1	5.5	미실시	
○○○읍처리구역	9.061	62.3	13.7	미실시	
○○권 계	57.671	321.7	12.7	-	
○○처리구역	36.472	321.7	12.7	미실시	
○○처리구역	7.813	-	-	미실시	
○○처리구역	6.349	-	-	미실시	
○○권 계	44.758	214.1	45.9	10.0	
○○처리구역	19.141	155.6	13.1	10.0	
○○처리구역	4.462	4.1	15.9	미실시	
○○처리구역	5.361	24.0	11.7	미실시	
○○처리구역	5.813	30.4	5.2	미실시	

조치할 사항 김해시장, 창원시장은

- ①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시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시공 평가 및 건설기술용역평가 실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
- ② 창원시는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, 기술진단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하수관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85) 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관로 연장은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(변경)계획(2011년) 상의 분류식 및 합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산정